

##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맹성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378
----------	-------

발의연월일 : 2023. 4. 14.

발의자 : 맹성규 · 민병덕 · 어기구  
백혜련 · 김승남 · 전해철  
유기홍 · 윤호중 · 강준현  
홍정민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비대면 관광에 대한 선호도 상승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 · 캠핑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행위 등을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쓰레기 · 폐수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에서의 강제조치는 그 대상이 장기 방치차량에 한정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현행법 규정만으로는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 취사행위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 목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축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에서의 금지 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및 제30조제3항제1호 신설 등)..

## 주차장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4(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lt;신 설&gt;</u>	<p>제6조의4(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p> <p><u>누구든지 국가, 지방자치단체,</u>  <u>「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u>  <u>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u>  <u>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u>  <u>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u>  <u>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u>  <u>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u>  <u>아니 된다.</u></p>
제30조(과태료) ① · ②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
<u>&lt;신 설&gt;</u>	<p>1. 제6조의4를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p> <p>2. 3.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p>
1. 2.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